2021회계연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1년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은 730만원임.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천원)

구 분	2021 당초예산	간주처리	기정예산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7,286	-	7,286	7,286	-	-
세외수입	7,286	-	7,286	7,286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7,286	-	7,286	7,286	-	-
기타수입	1,202	-	1,202	1,202	-	-
지난연도수입	6,084	-	6,084	6,084	-	-

2. 세출예산

○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7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천만원 대비 1.1%(2천만원) 감액 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율	
		예산		제2회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741,980	1,741,980	1,721,980	△20,000	△20,000	△1.1%	△1.1%
행정관리	소 계	1,741,980	1,741,980	1,721,980	△20,000	△20,000	△1.1%	△1.1%
	행정운영경비	504,180	504,180	504,180	-	-	-	-
	사 업 비	1,237,800	1,237,800	1,217,800	△20,000	△20,000	△1.6%	△1.6%

〈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원,%)

세부사업별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41,980	1,741,980	1,721,980	△20,000	△20,000	△1.1%	△1.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07,400	107,400	87,400	△20,000	△20,000	△18.6%	△18.6%

Ⅱ. 검토의견

1. 세출예산

○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개 사업에서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정 예산 17억 4천 2백만원 대비 1.1%(2천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원, %)

세부사업별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41,980	1,741,980	1,721,980	△20,000	△20,000	△1.1%	△1.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07,400	107,400	87,400	△20,000	△20,000	△18.6%	△18.6%

가.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본 사업은 청렴교육, 하정청백리상 등 청렴문화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나, 코로나19 델타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공무 출장은 제한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가용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제2회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107,400	87,400	△20,000	△18.6%
사무관리비	66,500	66,500	0	0.0%
국외업무여비	**20,000**	**0**	**△20,00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9,500	0	0.0%
포상금	11,400	11,400	0	0.0%

※ “델타 변이(dela variant)”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60%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델타 변이도 142개국으로 퍼졌다고 보고하였음(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Edition 52, published 10 August 2021 참조).[1)]

○ 행정안전부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로 금년 내에 국외 공무여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국외업무여비’의 전액(2천 5백만원) 감액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21년 8월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83개임. 51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4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11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56개국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임.

○ 또한,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현 상황의 단기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외업무여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고,

---

1)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weekly-epidemiological-update-on-covid-19---10-august-2021, 최종방문 2021년 8월 18일.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긴급성과 중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통합예산(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및 관리)으로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집행률 저조 사업

1) 감사위원회의 예산 집행현황

○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의 확대 등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임.

- 이에, 확충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신속한 재정집행, 잉여금·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출구조 조정으로 비효율적 예산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 감사위원회의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을 개선하여, 서울시 예산의 효율성 확보와 전략적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감사위원회는 예산현액(2021회계연도) 17억 4천 2백만원 중 8억 8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2021년 7월말 기준)은 50.8% 수준이며,

- 사업비는 12억 3천 7백만원 중 6억 1천 2백만원을 집행하여 4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54.2%(5억 4백만원 중 2억 7천 3백만원 집행)를 집행했으며,

※ 각 부서별 예산 대비 집행률은 감사담당관 39.9%, 공공감사담당관 33.3%, 안전감사담당관 58.2%, 조사담당관 64.4% 수준임.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감사위원회	1,741,980	885,602	856,378	50.8%
사업비	1,237,800	612,453	625,347	49.5%
감사담당관	626,998	250,311	376,687	39.9%
공공감사당당관	74,420	24,811	49,609	33.3%
안전감사담당관	131,150	76,318	54,832	58.2%
조사담당관	405,232	261,013	144,219	64.4%
행정운영경비	504,180	273,149	231,031	54.2%

〈 집행률 60% 이하 세부사업 현황 〉

○ 감사위원회는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021년 7월말 현재 집행률이 60% 이하인 사업은 9개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감사위원회 소관 집행률 60%이하 세부사업 현황〉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1	부조리신고 보상	5,000	0	5,000	0.0%
2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19,000	4,085	14,915	21.5%
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7,400	14,015	33,385	29.6%
4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74,420	24,811	49,609	33.3%
5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411,107	148,645	262,462	36.2%
6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07,400	40,990	66,410	38.2%
7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활동 강화	91,210	46,318	44,892	50.8%
8	청렴시책 평가·시상	61,400	35,500	25,900	57.8%
9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5,240	38,656	26,584	59.3%

2) 부조리신고 보상

○ 본 사업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7월말 현재까지 집행 내역이 없음.

〈 "부조리신고 보상"의 집행내역 현황〉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부조리신고 보상	5,000	0	5,000	0.0%
기타보상금	5,000	0	5,000	0.0%

○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연 1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위원회는 매년 연말 심의회를 개최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급대상은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실명으로 신고된 민원이나 제보사항 중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신분상·재정상·행정상(제도개선)등 조치가 이루어져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경우

〈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건, 천원)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건수	5	7	4	3	6
금액	5,000	5,000	5,000	5,000	9,800

○ 다만, 부조리신고의 대상(공무원의 비위)은 공익제보의 신고대상(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위법 행위 등)에 포함되며, 공익제보와 유사점이 많으나,

- 부조리 보상금은 공익제보의 보상금과 비교했을 때 보상기준, 보상의 결정 시기, 보상액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 조례*는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를 2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은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시민참여 및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1회 지급규정'과 지급기준의 변경 또는 예산의 조정 등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 별표1)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액	-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이내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액	
		· 1억원이하	- 추징·환수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3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2억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2백만원 이내

※ 공익제보 보상금(「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에 따른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지급(제11조 제2항)
- 시 재정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지급, **상한금액 없음**.(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지급)(제11조 제3항)
- 시 재정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6년 이내
- 시장은 **신청일 6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3)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 본 사업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평가·시상·특별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1천 9백만원의 예산 중 4백만원을 집행하여, 21.5%(1,150만원)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21회계년도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의 집행내역 〉

(2021년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19,000	4,085	14,915	21.5%
사무관리비	6,000	0	6,00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4,085	2,915	58.4%
포상금	6,000	0	6,000	0.0%

○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 6백만원은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감사위원회-LH-SH)을 위한 예산(3백만원, 2회)이나, 본 예산은 2020년도에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했음.

〈 2020회계년도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3,000	11,525	11,475	49.9%
사무관리비	**10,000**	**0**	**10,00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5,525	1,475	21.1%
포상금	6,000	6,000	0	0.0%

○ 감사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서울 주택공사(SH공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보교류는 필요하다고 보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반드시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워크숍이 코로나 대응보다 중요한 감사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4단계가 연장에 재연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 감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워크숍 예산도 전액 감액하여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워크숍을 위한 예산은 감액없이 편성하고 있는바, 본 워크숍을 반드시 강행해야 할 긴급성과 중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 본 사업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직자재산조사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4분기에 집행할 예정이고,

-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퇴직공직자 안내서 인쇄 등을 위한 예산이나, 지난년도(2020회계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예산의 집행률은 41.7%에 불과하였으며, 금년 7월말 ‘사무관리비’의 집행내역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바,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회계연도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의 집행내역 〉

(2021년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47,400	14,015	33,385	29.6%
사무관리비	42,400	12,515	29,885	29.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1,500	3,500	30.0%

○ ‘사무관리비’ 중 퇴직공직자 안내서(2종*) 제작 사업은 매년 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서울시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매년 130여명이 퇴직하고 있으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공무원 행동가이드라인 안내서의 인쇄 수량(2000부)이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 등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 업무시스템’의 담당자 수를 감안했을 때, 취업심사시스템 관련 매뉴얼 500부를 매년 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효율적 사업추진과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의 취업제한 퇴직자 현황 〉

(단위:명)

	5년 평균	2020	2019	2018	2017	2016
소 계	130.2	157	135	140	108	111
본청	43.6	52	35	50	40	41
사업소	12.2	16	18	12	7	8
자치구	74.4	89	82	78	61	62

출처 : 서울시 행정포털 - e-인사마당 - 퇴직자현황 재구성

· 연도구성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퇴직자수 : 재산등록 의무자 중 1급~4급까지 퇴직자의 수

· 구 분 : 본청, 사업소, 자치구(25개 자치구 전체)

· 포함직군 :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임기제 등 9개 직군

· 포함직류 : 행정, 기계 등 49종, 비서실장 등 정무직 6종, 전문경력관 3종, 임기제 21종 등 80개 직류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4급 이상, 지방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감사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 **제한기간 :**

- 2015.3.30. 이전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 퇴직일부터 2년간
- 2015.3.31. 이후 퇴직한 취업제한대상자 : 퇴직일부터 3년간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 안내서 (출처 : 감사위원회 2021년 사업별 설명서 중 예산산출기초)

· 퇴직공무원 행동가이드라인 안내서 인쇄비(2,000부*2,000원) = 4,000천원

· 취업심사 업무취급시스템 매뉴얼 인쇄비(500부*2,000원) = 1,000천원

〈 2020회계연도 "공익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53,609	31,244	22,365	41.7%
사무관리비	48,609	29,141	19,468	4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2,103	2,897	57.9%

5)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 본 사업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감사협의체운영으로 부조리를 예방하기 사업으로, 현재까지 3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 전년도(2020회계연도)에도 최종 집행률은 34.2%로,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 편성 규모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의 집행내역 〉

(2021년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74,420	24,811	49,609	33.3%
사무관리비	47,860	9,625	38,235	2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3,842	6,158	38.4%
특정업무경비	16,560	11,344	5,216	68.5%

〈 2020회계연도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93,860	61,797	32,063	34.2%
사무관리비	67,300	37,377	29,923	44.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7,992	2,008	20.1%
특정업무경비	16,560	16,427	133	0.8%

○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감사위원회 워크숍, 시구감사협의회 직무 워크숍, 공익감사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나,

- 본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은 코로나19 대응,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에 재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감사위원회는 국민의 희생을 감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워크숍’과 ‘시구감사협의 직무워크숍’ 예산을 각각 1천만원씩 편성·유지하고 있는바,

- 전염병 유행 속에서 워크숍 예산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당위성과 중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시급성과 예산유지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의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 〉

○감사위원회 운영	= 52,500천원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00,000원*6명*24회	= 28,800천원
- 위원회 안건 검토 수당 150,000원*6명*24회	= 21,600천원
- 교통비1식* 2,100,000원	= 2,100천원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 참여	= 159,600천원
- 연간 감사활동 공익감사단 참여 수당 200,000원*연간감사4개*6팀*3.5명*7일	=117,600천원
- 보조사업, 민간위탁 모니터링 공익감사단 참여 수당 200,000원*연2회*30명*2일	= 24,000천원
- 사업부서 지도점검 지원 공익감사단 참여 수당 200,000원*연10회*2명*2일	= 8,000천원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 10,000천원
○일상감사 직무교육 운영	= 3,000천원
○감사사례집 발간 10,000,000원*1팀*1회	= 10,000천원
○시구감사협의회 직무 워크숍 10,000,000원	= 10,000천원
○감사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운영 2,500,000원*2회	= 5,000천원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업무추진	= 48,000천원

〈 집행률 40% 미만 통계목 〉

○ 감사위원회 소관 통별목별 집행율은 다음과 표와 같고,

- '국외업무여비'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포상금',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1회계년도 감사위원회 예산 통계목별 집행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통계목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소계	38	1,741,980	885,602	856,378	50.8%
국외업무여비	1	20,000	-	20,000	0.0%
포상금	6	74,260	24,843	49,417	33.5%
국내여비	1	186,200	80,000	106,200	43.0%
사무관리비	12	922,070	415,429	506,641	45.1%
공공운영비	1	8,532	4,260	4,272	4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	91,000	52,052	38,948	57.2%
특정업무경비	4	122,320	70,455	51,865	57.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29,487	16,990	12,497	57.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19,920	11,996	7,924	60.2%
기타보상금	2	237,200	180,536	56,664	76.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9,900	7,950	1,950	80.3%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	21,091	21,091	-	100.0%

6) 포상금

○ '포상금'은 총 6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6개 사업 모두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통상 포상금은 연말에 집행된다는 점에서 집행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4종의 포상(①‘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②‘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③‘하정청백리 포상’, ④‘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등)은 모두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사례를 포상하는 것으로, 목적과 실행방법이 동일한바, 포상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포상금 집행내역 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포상금	6,000	0	6,000	0.0%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포상금	12,000	6,000	6,000	50.0%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포상금	7,000	0	7,000	0.0%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포상금	11,400	2,400	9,000	21.1%
청렴시책 평가·시상	포상금	6,900	0	6,900	0.0%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활동 강화	포상금	30,960	16,443	14,517	53.1%

○ 중복적 포상을 운영하는 것이 수상의 영예를 낮추거나, 포상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은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는바, 중복사업의 통합 또는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포상금 편성내역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금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하정청백리 포상

· 청렴시책 평가·시상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활동 강화 : 공무원 안전순찰 평가 포상

○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안전순찰 평가 포상금'(세부사업명 :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 감사활동 강화)의 근거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 동 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도록 규정(제37조제1항 및 제56조)하고 있으며, 보도파손·도로파손·가로정비·교통 등 안전순찰이 아닌 재난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포상(제42조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공무원 안전순찰 평가 포상금'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감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행정안전부는 **포상금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포상금(행정안전부, 2021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17P)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등(배우자 포함)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 감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안전순찰 평가 포상금'의 근거

· 2021년 감사위원회 소관 사업별설명서, 42P.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2조 및 제56조
  - 서울시장방침 2019-제53호

· 2021년 상반기 공무원 안전순찰 포상계획(2021.5.12. 안전감사담당관-5553)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7조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6조
-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19.1.1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자치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자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과정에 따른 사업 및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 수행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감사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다 편성' 및 '사무관리비로 사업비 편성' 등이 지적되었고, 불용률도 19.3%에 달하고 있으나,

- 감사위원회는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포상금이나, 사무관리비로 추진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의 편성목적과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의 불용률 등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를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

(2021년 7월말 기준, 단위:천원)

통계목	사업 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무관리비	12	922,070	415,429	506,641	45.1%

〈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사업 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무관리비	12	929,661	750,026	179,635	19.3%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3년 평균액	824,896	708,665	117,171	85.9%
2020	926,661	750,026	179,636	80.9%
2019	691,689	680,031	11,478	98.3%
2018	856,339	695,938	160,401	81.3%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